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회사내 예약승계규정 등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기업에게도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허용하며, 직무발명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 및 육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안 제2조, 제10조 및 제13조)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어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을 위해 장비, 연구비, 급여 등을

기여한 회사에게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며, 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범위를 확대함.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1조, 제43조, 제46조의2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조정절차를 개선함.

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5)

공공성이 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전 1호의 발명 외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 및 육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등록”을 “디자인등록, 배치설계등록, 품종보호등록”으로, “디자인권”을 “디자인권, 배치설계권, 품종보호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업원등이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대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을 “권리를 승계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의사를 문서로 알린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는 무효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을 “승계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27조제2항 중 “제5조에 따른”을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40명”을 “8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의해 설립된 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중 “3명”을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를 “(조정외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종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5.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에 규정된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의2제2항 중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를 “사유”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조정부”로 한다.

제55조 다음에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삽입한다.

제6장의2에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사업)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국기·국장 사용금지 위반 행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국기·국장 사용금지 위반 행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8.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위원회의 업무지원
10.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감정)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판, 수사 또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의 양 당사자로부터 지

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 감정인, 감정대상, 감정절차, 감정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5(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6조제2항 중 “발명기관”을 “보호원, 발명기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을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감정인(보호원의 임직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 ④ (생략)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 디자인권, 배치설계권, 품종보호권-----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종업원등이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 실시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대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권리를 승계시키는

-----.

②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의사를 문서로 알린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는 무효로 한다.

<삭 제>

권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생략)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승계를 -----

<삭제>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

2. ~ 6. (생략)

④ ~ ⑥ (생략)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여 수급권자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

-----.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80명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의해 설립된 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2조(조정부) -----

----- 1명 또는 3명 -----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 (생략)

②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의 요구) (현행 제1항과 같음)

<삭제>

제46조의2(조정의 종료) ① -----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종료--.

1. ~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5.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에 규정된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 사유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조정부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신 설>

용한다.

⑤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사업)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국기·국장 사용금지 위반 행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

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국기·국
장 사용금지 위반 행위,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
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위반행
위에 대한 시정권고

8.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9. 위원회의 업무지원

10.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
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
업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보호원에 대하여 사
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감정) ① 보호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신 설>

는 경우에는 제55조의3제1항제 8호에 따른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판, 수사 또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인 양 당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 감정인, 감정대상, 감정절차, 감정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5(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신 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보호원,
발명기관-----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① -----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

② ----- 정보화전문

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

----- 한정

한다 및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감정인(보호원의 임직원을 제외
한다-----.

<p>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60조(과태료)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5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481-8180